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17

발의연월일: 2021. 5. 6.

발 의 자:서영교·김민철・박상혁

양정숙 · 오영환 · 오영훈

유정주 • 이형석 • 임오경

임호선 · 한병도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확산이 우려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을 확산하고, 자동차 산업 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 임(안 제6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 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
| 면) ① ~ ② (생 략) | 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 ③ |
| 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 |
|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 |
|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 | |
|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 |
|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 | |
| 면한다. |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2021년 1월 1일부터 <u>2021년</u> | 3 <u>2024년</u> |
|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 <u>12월 31일</u> |
|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 |
| 를 면제하고, 취득가액이 40 | |
|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 |
| 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 |
|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 4 |
|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 |
| 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 |
|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 |
|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 | |

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 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 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u>2024</u> |
|-------------|
| 년 12월 31일 |
| |
| |
| |
| |
| |